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1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최재규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 의회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23년	월 2,015,44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2023년	월 2,015,44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참 고**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2019년	월 1,882,37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월 1,916,250원)
2021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률만큼 인상한 금액 (월 1,969,90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월 1,987,620원)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